

#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닭·오리 등 가금류의 도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가축의 도살 등)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도살·처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1조(가축의 검사)에 따라 도살·처리한 가축은 검사관의 생체 및 해체검사를 받아야 함.

그러나 최근 일부 지역에서 하절기 특수를 맞아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불법도축 및 부정축산물 유통 행위 관련 보도가 있는 바, 각 지방청, 지자체에서는 관할 지역 내 불법도축 행위 등 단속을 강화함. 도축검사에 합격한 식육 유통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참고로 식약의약품안전처는 불법도축, 부정축산물 유통 등의 근절을 위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17.11.17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도축장을 허용하고 있으니 현장에서 활용하시고 축산물 안전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람.

## 참고1 '17.11.17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차량을 이용한 도축업 시설기준 특례

(1) 허가관청은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관할 구역 내 가축(소·돼지는 제외한다)의 국내수급상황·지역여건·특성 또는 도축 예상 마릿수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특정 장소를 지정하여 차량을 작업장으로 하는 도축업을 허가할 수 있다.

(2) 도축업의 공통 시설기준 및 개별 시설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 하되, 허가관청은 다음과 같이 (가) 및 (나)에 관한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작업장으로 하는 차량은 길이 7.3m, 폭 2.3m 이상, 높이는 도체를 매달 때 도체가 바닥에 닿지 아니할 정도이어야 하고, 가축 종류별로 말·당나귀·사슴은 10마리 이상, 양은 50마리 이상, 토끼는 100마리 이상, 닭·오리·칠면조·거위·메추리·평은 500마리 이상을 하루에 도축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가) 작업장의 구조·시설별 면적

(나) 도축 관련 시설(계류장, 생체검사장, 소독준비실, 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탈의실·목욕실·휴게실 등 부대시설, 물뿌림시설, 작업실 안 시설별 구획, 출입문의 자동·반자동화, 자동 탕지기·탈모기, 외부 차단시설, 시설의 배치순서, 각 시설별 면적, 도축기계의 자동식 설치 등)